

일시 : 2014. 1. 10(금) 15:00

장소 : 농협 NH아트홀

서
울
학
생
인
권
조
례
개
정
(안)
토
론
자
료
집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서
울
特
別
市
教
育
廳



일시 : 2014. 1. 10(금) 15:00
장소 : 농협 NH아트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 차 례 ◎

1. 진행 일정표	1
2. 기조 발제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5
3. 발제 1 (명일여자고등학교 학생 김수경)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관련 학생참여단의 입장	9
4. 발제 2 (영림중학교 교사 이명남)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교사로서 불편한 이유!	13
5. 발제 3 (남서울중학교 교장 오승걸)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과 과제	23
6. 발제 4 (공교육사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경자)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29
7. 발제 5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배경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조례의 취지와 효력을 아예 무력화 하려는가	33
8. 발제 6 (협성대학교 부교수 김성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	41

〈부록〉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 신·구조문대비표	56
3. 개정조례안 전문	70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 개요

○ 일시 : 2014. 1. 10(금) 15:00 ~ 17:00(2시간)

○ 장소 : 농협 NH아트홀(서대문역 6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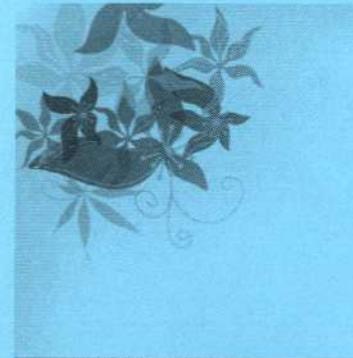
□ 사회자(1명) 및 토론자(6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수원대학교	부총장	강 인 수	사회
2	명일여자고등학교	학생	김 수 경	학생참여단
3	영림중학교	교사	이 명 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	남서울중학교	교장	오 승 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5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 경 자	학부모
6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배 경 내	학생인권위원회
7	협성대학교	부교수	김 성 기	전문가

□ 진행 일정

시 간	일 정	주요 내용	방법	주관
14:30-15:00 (30')	등 록	- 등록		
15:00-15:20 (20')	개 회	- 국민의례 - 토론자 및 내빈소개 - 인사말씀(평생진로교육국장)		장학관
15:20-15:30 (10')	기조발제	-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발제	학교생활교육과장
15:30-16:30 (60')	지정 토론	- 학생이 생각하는 인권조례 - 학부모가 생각하는 인권조례 - 교사가 생각하는 인권조례 -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권조례	토론	- 학생 1명 - 학부모 1명 - 교원 2명 - 전문가 2명
16:30-16:50 (20')	의견 수렴	- 현장 참가자 의견 수렴	토론	사회
16:50-17:00 (10')	폐 회	- 사전의견수렴 설문지 제출 - 귀가		장학관

기조 발제



한국의 전통 문화는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고려·조선 시대에 걸친 궁궐과 사찰 건축은 그 아름다움과 기술적 척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단지 물질적인 가치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이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은 문화재의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표시로,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과 관심이 확장되었다.

본 글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의 의미와 그에 따른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방향을 제시해보려 한다.

문화재는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고려·조선 시대에 걸친 궁궐과 사찰 건축은 그 아름다움과 기술적 척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단지 물질적인 가치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이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은 문화재의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표시로,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과 관심이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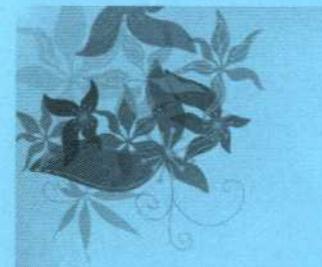
본 글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의 의미와 그에 따른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방향을 제시해보려 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신 병 찬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토론자 발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관련 학생참여단의 입장

김 수 경

서울특별시 학생참여단

※ 아래 글의 내용은 참여단원 전원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민과 시의회, 시교육청이 함께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을 이야기하며 시행이 되지 않았던 시간을 고려한다면 누구라도 조례 개정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던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37조 제 2항」은 1)학생참여단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제시’를 업무로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공개되기까지 학생참여단에게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도, 조례 개정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마저도 없었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서의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모습까지 보였다. 2013년 12월 30일 조례 개정안 발표를 위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어느 기자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의 학생참여단 의견 수렴 사실여부를 물었던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담당 장학관은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마련되던 중, 교육감과 학생참여단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고, 풍부하고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풍부하고 깊은 논의’는 2013년 11월 29일 개최되었던 ‘학생 대표와 교육감과의 토크 콘서트’였을 것이다. 주제어로 풀어보는 행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업, 진로, 동아리, 자치활동, 인권’에 대한 대화를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 37조 제 2항 제 2절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여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 1항에서 참여단의 성격을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바, 입법예고 이전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라고 판단함.

나누었지만 학생들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의 성격보다는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현안 입장 발표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바 있다. 2) 결정적으로 행사 당일 학생참여단이 어떤 기구인지 아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던 교육감이 ‘풍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에 조차도 개정안 발표 당일에서야 사실을 알려 비난을 받았다. 이에 학생참여단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잘못된 사실마저 언론에 발표한 것은 불편한 이야기는 건너뛰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최소한 현재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3)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구들에게 조차 사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에 의하여 이번 입법예고가 부당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보장이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와 시교육청의 용기, 시의회의 결정이 어우러진 하모니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주체들과 서울교육의 양대 축(의회-교육청)은 모두 함께 ‘존중과 배려’라는 인권나무의 씨앗을 뿌렸다. 더디지만 뿌리를 내렸고, 싹을 틔워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들이 세워졌고, 일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굳센 원칙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협의하여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의 시행으로 교권이 실추되었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정과정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하여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교육청은 수차례의 협의회, 자문위 개최 절차, 일부 반대 의견 등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학생참여단 내에서는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제 3조 제 3항을 통하여 4) 학칙 등의 학교 규정이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5) 학내 질서 문란, 교육상 필요 등의 이유로 학칙으로 인권을 제한

2) 2013년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과 학생참여단, 학생참여위원회가 만나 교육현안에 대하여 논의한 자리에서 사회자가 학생참여단이 어떤 기구인지 아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교육감은 “학교 및 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라고 답하였다. /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 사실이 없음.

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

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3조 제3항: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제 3조 제 3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수정되어 있다. 현행 조례는 제 3조 3항을 통하여 우리 6) 헌법 제 37조 제 2항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예컨대 개정(안) 제 3조 3항의 ‘학내 질서 문란,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과 같이 판단 기준이 모호해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으로 인권을 제한되는 위험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보호 장치’의 개념인셈이다. 개정조항이 조례의 입법정신에 부합하려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해석이 모호한 학칙들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서 문란과 중요한 교육상 필요가 어떤 경우인 것인지에 대하여 구성원 대부분이 납득할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해져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학교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멀쩡한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의심을 받지는 않을지 염려를 감출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모호하고, 염려스러운 조항이 또 있다. 그것은 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수정 내용인데, 현행 조례에서 임신·출산, 성적 지향 여부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문구가 삭제되고, 성적 지향은 ‘개인 성향’으로 수정되었다. 조례가 임신·출산 및 특정 성적지향을 가질 것을 부추긴다는 일부 교계의 그릇된 왜곡과는 달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5조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아래 다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여지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러한 조항이 학생들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그릇된 주장은 근거삼아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참여단 내부에서도 당혹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의 권리가 폭넓게 주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단은 추가로 제 7) 12조(복장 및 두발), 8) 제 13조 (사생활 및 소지품) 조항의 개정에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 현행 조례 제 12조 제 2항의 경우 두발 및 용모의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인데, 한참 하위 개념인 시행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게끔 한 개정(안)은 9)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에서 강제이발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6) 헌법 제 37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7) [현행] 제 12조 제 2항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8) [현행] 제 13조 제 2항: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머리가 단정하면 공부에 집중한다는 비과학적 미신 및 학생신분 식별이라는 학교장의 운영편의 등을 이른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지품 검사를 규정한 현행 조례 제 13조 제 2항은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항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괄검사 등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필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학생 입장에서의 세심한 고민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 문제,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 축소 등 행정 측면에서의 편의, 목적 등으로 개정된 조항들에 대하여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해당 사안들에 대하여서는 자매 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해줄 것으로 판단한다.

만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개정된다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개정을 하더라도 10)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법적 책무가 성실히 이행되었었다면 교실은 조금씩 안정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두고 옥신각신 하는 것이,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채 조례를 개정한다는 작금의 모습들이 학교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장 큰 주범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참여단은 다시금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마련 과정에서 학생 참여단 및 학생인권위원회 등의 인권관련 기구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강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며 개정(안)이 현행조례의 입법 취지 등에 반하여 학생인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밝힌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교사로서 불편한 이유!

이명남

영림중학교 교사

안타까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입법예고 소식

지난 해 말, 태어나자마자 교육부의 제소로 제대로 실행된 적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떨어뜨리고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에게도 의무만큼이나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강요하지만 오늘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 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몇몇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지내오던 학생들이 십여 년 넘게 주장해온 요구들을 담아 서울 시민 10만 명이 서명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수차례 토론을 통해 조정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발의된 조례이다. 그 내용도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1991년 국회비준 통과) 등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어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학교에 정착하려면 다소의 진통은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오랜 독재 시절을 겪는 동안 우리 사회는 인권에 대해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은 경험이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으니 약자인 아이들의 인권은 오죽했으랴 싶다.

솔직하길 바라면서 정작 솔직한 말을 듣기는 싫어하는 어른이 많습니다. 우리는 방금 꾸지람을 들은 아이가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화가 난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솔직히 내뱉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1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29조 (인권교육), 제 30조 (홍보) 윤명화 서울시의원 “사이버 인권교육 받은 학생, 학부모 33명불과 (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814451408096&outlink=1)

나 또한 학창 시절이 유신 독재 시절과 맞물렸으니 인권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깟 머리가 좀 길다고 집에 가는 길에 창피 당하라고 밤송이 머리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사춘기 여학생의 단발머리의 한 쪽만 자르는 선생님들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건너편 남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기에 운동장 모래밭에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박고 벌을 서야 하는 것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유신독재가 끝난 이후에도 비록 교복은 입지 않았으나 군부 독재시절이라 학생들의 상황은 비슷했다. 통제와 억압이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통하던 시기였으니 교사로서도 답답하기도 한 시절이었다. 그렇게 나와 같은 시절을 겪었던 그 이후를 경험했던 지금 교사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누려보지 못한 인권이기에 대부분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학부모도, 학생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지금 당신의 미소를 선물하세요. 잘못된 행동과 나쁜 행실을 반복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내심과 친밀한 이해입니다. 비행 청소년에게는 사랑을 쏟아야합니다. 그들의 분노와 반항은 정당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안일한 도덕에 동조하느니 외롭고 불쌍한 비행 청소년 편에 서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미소를 선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이미 늦습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요즘 유행하는 “안녕들하십니까?”를 들으면 교사로서 늘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들었던 미안했던 마음이 떠오른다.

화장실 청소하다가 집게로도 도저히 줍지 못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못해 뭐하나고 혼낼 수만은 없었다.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화장지가 없다고 교사 화장실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휴지를 가지고 다니라고 혼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교실에 휴지를 달아주기가 시작되었다. 무더운 여름 체육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밀려와서 교무실 정수기의 물을 얻어먹자 할 때 참으라고 내몰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정수기를 늘리고, 체육관 앞에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불편한 곳이 없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 교무실만 따뜻하다고 볼멘 소리하는 아이들을 버릇없다고만 할 수 없었다. 나도 만약 연수를 갔는데 냉난방이 잘 안 된다면 당연히 불만 사항을 이야기 했을 터이니 아이들도 정당하게 자신들의 교실은 왜 난방이 되지 않느냐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권리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교무실과 교실의 냉난방이 거의 같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위탁급식업체가 인스턴트 음식을 내놓을 때 집의 아이들에게 안 먹이는 것들을 아이들이 먹을 때는 가슴 아팠다. 그래서 직영급식을 주장했고 친환경 급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말 많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나만, 학교에는 교사인 나만 안녕한 일이 너무 많았다. 아무런 의심없이 아직도 그러하다.

아이들에게 쓰려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들……. “엄마는 어른들이 차를 엎지르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내가 엎지르면 화를 내요!” 아이들은 불공평한 대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울음을 터뜨리지만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고 성가신 것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무시할 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칭얼거리고 징징대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쓰려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인권이란 그런 것이다. 누군가의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 인간적 존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권을 학생들이 뺏은 적은 없다. 왜냐하면 “교권”은 대한민국 헌법 32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것을 떨어뜨린다니, 아무리 중2가 무섭다는 농담이 회자되지만 그럴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권의 의미는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치적 혹은 그 밖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오직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학생인권과 대치되는 권리이거나 학생 인권을 뺏으면서까지 행사되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판사의 권리가 피고인에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간섭하는 외부 압력에 대해 행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참의미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를 훼손하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 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려서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책임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학교가 무너지고, 교권이 떨어지고 등의 자극적인 말들로 도배된 일부 언론을 빙자해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된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일선 학교의 학생지도가 어려움을 겪고 교권이 실추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만족도 조사나 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실행 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평가를 할 수도 없다. 제정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기한 무효소송에 계류되었고, 아직 무효소송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했다. 그렇게 숨만(?) 쉬는 상태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만족도에 대한 기사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확립이라는 달을 가린 손가락 같은 이유로 개정한다고 훼손하기보다는 교원 인권감수성 교육,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어떻게 전개하여 교육 현장을 인권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더 전념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보호, 학생·교사 시각차 여전>

"학생인권 신장됐다" 답변...교사 86%·학생 40%

시행 2년째로 접어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시각차가 여전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도내 초·중·고교생 18만8천300여명과 교사 2만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 자료를 24일 내놓았다. 조사결과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교사가 82.3%인 반면 학생은 46.2%에 불과했다.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존중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교사의 86.9%가 "그렇다"고 한 반면 학생은 4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강화됐다고 답변한 교사도 86.6%에 달했으나 학생은 40.7%에 그쳤다.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은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질문과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교사들은 93.5%와 88.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답변한 학생은 60.3%와 51.9%에 머물렀다. 두발 및 복장 단속이 사라졌는지와 휴대전화 및 소지품 검사·압수가 사라졌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학생보다 교사가 월등히 높았다. 교실과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등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생과 교사 간 큰 시각차를 보였으며, 조례 시행 이후 체벌에 대해서는 교사 83.6%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반면 학생들은 39%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50% 정도는 교사들의 언어폭력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10년 38.8%에서 지난해 46.2%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두발 및 복장 단속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에 대해 중·고교생 30~40%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정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것"이라며 "일부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두발·복장 단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바로 잡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개정 사유 및 내용의 불편함

개정 사유 -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 제4조(책무)

<p>⑤ 개정 전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权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개정 후 - 학생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p>(신설) 보호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3.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 결정에 대한 존중
--	---

개정 사유 - 상호 모순된 조례 내용 수정 : 제 3조 (학생인권 보장 원칙)

<p>① ~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p> <p>②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p>	<p>① ~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p> <p>②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p>
---	---

제 4조(책무)와 제 3조(학생인권 보장 원칙)의 개정 내용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다. 학교에서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인권조례에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만 늘어놓다니. 그럼 교사의 책무는 왜 없는가?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 그리고 보장 원칙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권은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불편해진다. 말로만 배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실제 효과가 없

다. 왜냐면 학생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행동과 사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개정안처럼 학생들의 책무만이 가득하고 권리의 제한으로 정작 중요한 “인권”이 빠진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인권이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영악하게도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더 잘 보고 배울 것이다.

개정 사유 -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사항 삭제 : 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u>임신 또는 출산</u> (<u>삭제</u>),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u>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u>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개인 성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

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들이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여 삭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성적 지향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실제 존재하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존재들을 부정할 때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시해도 될 존재가 있음으로 각인된다. 무서운 일이다. 교육은 과거를 반영하거나 현재 지향이 아니라 좀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제시해야 한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이다. 사회는 그렇게 변해가고 인권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요구하는데 도대체 학교는 더욱 뒷걸음치려하니 교사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인정할 때 아이들이 모방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을 부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던 모든 아이들을 불행하게 한다. 서로를 질시하는데 아이들 마음이 편해질 수은 없으리라.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순간, 공부나 하라는 어른들의 늘 그런 말을 이젠 버리자! 인권을 알게 된 아이들이 혹시 교사들을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자!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협력관계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수업과 생활교육이 그렇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던 시절은 잊자!

아이들은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대로 산다. 구제불능이 붙여지면 스스로를 구제불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이이다. 어른들이 믿고 지지해주는 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 그렇게 존중받은 아이들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 무엇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지 이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세대, 지구촌에서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세계 시민의 덕목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자!

개정사유 -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 보장 : 제 13조(사생활, 소지품)

② 개정 전 : ~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선 아니 된다.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정 후 :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제 13조(사생활, 소지품)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해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교권을 소지품 검사로 확보해준다는 것이다. 교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육청과 우리는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교권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인가? 자신들의 인권만 주장하는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은 무시하고,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것을 사실화(?) 시키는 것은 쉬웠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벌어진 몇 가지 선정적인 사건 보도만 있으면 되었다. 왜? 또 사건의 진실보다는 여론 조작에 필요한 결과만을 중점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말이다. 그래서 불쌍한 학생들은 인권침해도 당하고 언론의 희생양이 되어 교권추락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불편해진다. 이미 교권추락의 주범이 되었기에 사생활 침해 정도는 참아야 한다가 되었다. “~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필요한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누가 정하는지,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는 어찌 보면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전에 목적과 범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도 역시 목적과 범위를 학교에서 정한다면 존중은 아닐 것이다.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하는데 과도한의 기준이 애매하다. 누가 과도한지 아닌지를 정하는가?

그동안 학생들이 느끼기에 또는 헌법, 유엔아동 권리협약 등에 맞지 않았기에 학생인권조례에서 “~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선 아니 된다.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다 보장한 것이 아닌가? 이것만 보아도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조례라고 하면서 그 속내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개정 사유 - 상위법령 위반 : 제 12조 (복장, 두발)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신설 > ③ 제 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 12조 (복장, 두발)는 상위법 위반 해소가 개정 이유라는데 많은 인권전문가들과 서울시의회가 토론하고 만들어 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위반이라면 인권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여기서 불편해진다. 이것은 상위법 위반 해소가 아니라 아직도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지도가 학생들의 내면까지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고 여기는 예전 생활지도에 대한 막연한 향수일 뿐은 아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단 말인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어 일정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청은 교권의 개념을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학교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것은 아닌가?

인권조례 제정 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던 시점에 일부 학생들이 오해하여 마치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동안 학업 스트레스와 늘려왔던 짊음을 누리기 위해 마냥 놀며 보내는 대학 1년생들이 부모들의 속을 태우는 것처럼.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그런 행동은 교육의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그 교육 역시 인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런 행동을 했으니 너희는 인권을 누릴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라는 인권의 기본 정의를 모르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건 사람이면 보장받아야 할 것이 인권인 것이다.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복장을 규제하고, 어길 시에 처벌하지 못한다면 교사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일부 교사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일부 교사의 주장 때문에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허용이 교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진정한 교권침해는 따로 있다. 요즘 몇몇 고등학교에서 국사교과서 채택을 하는데 학교장이 특정교과서를 채택 혹은 배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친목단체 교장단 회의에서 수당을 담합(?)하고 부장교사들의 시수를 정하고 마치 법인양 내세우고, 법정 수업일수보다 5일이나

수업일수를 늘려 8월 무더위가 한창일 때 개학하게 만들고,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지침과 무관하게 냉난방기의 가동을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짐통교실 아니면 냉방교실에서 수업하게 하는 것이 교권침해다. 교육적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꾸고, 학교에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 특정한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공문을 남발하여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교권 침해다. 교사의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믿지 못하여 각종 누가기록부 등을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그러므로 교권 침해의 주범은 학생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교육청은 오히려 교사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학생들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외부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 개정안을 내어 놓는다면,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되짚어 보아 수정할 것은 없는지, 아니면 미래 가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정해 할 가치관이라면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교권 회복 같은 이유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만 보장받거나 회복될 수 있는 교권이라면 그건 애초부터 교권이 아니며 궤변으로 왜곡된 권리이다. 그런 권리를 교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권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다. 그래서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불편해지는 이유이다.

이렇게 교사들을 불편하게 하는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이유로도 계속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 계획이 철회되길 바란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풀어가는 교권 상승

머리카락의 색깔, 길이, 모양을 통제한다고 학생들 머릿속 통제가 가능할까?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통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목적을 만약 달성한다면 그 후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 책임은 어디로 넘길 작정인가? 혹시 교사들에게 넘기는 것인가? 가산점도 주는데, 두발·복장도 통제하고 소지품도 검사하게 했는데 라며, 다음 희생양은 교사인가?

구로·금천 지구에서 2013년 실시한 혁신지구 사업 중에서 모든 교사가 만족한 사업이 중학교 2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5명)이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학교

폭력도 없었다.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평화로운 교실이었다.

학년부를 강화하여 담임들에게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줄인 학교에서도 학생들과의 갈등이 없이 생활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학교 규정을 학생들과 토론하여 만든 많은 학교에서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학교 폭력은 없었다.

교장이 권위적이지 않은 우리 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도 나섰다.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 유기농 친환경 매점 1호를 열었고,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나서서 책읽기를 해주고 있다. 3학년 학년말 전환기 통합수업에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도록 뜨개질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도 했다. 교장이 권위를 버리자 그 권위는 더 빛나고 있다. 교권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간담회로 풀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교권 추락이 왜 일어나는지 구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대통령, 교육감 공약이던 학급당 인원 감축만 되면 두려운 교권 추락은 없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하자.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 혹은 다른 의도에 의해 서울 교육과 서울 학생상의 미래를 제시할 학생인권조례의 격을 각급 학교 규정정도의 격으로 떨어드리지 말기 바란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은 있다. 엄한 학생들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고 교권 상승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방향을 전환해주길 바란다.

어른이라는 특권으로 아이의 잘못만 꼼꼼히 기록하는지요? 우리는 아이들이 우릴 비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대신 그 책무를 아이들에게 맡겨 놓죠. 교사도 마찬가지로 어른의 특권을 차지하고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는 포기하고 아이들을 감시합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꼼꼼히 기록하면서 자기 잘못을 무시하죠. 우리는 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다루기 힘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 아닌가요?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과 과제

오승걸

남서울중학교 교장

1. 학생 인권의 등장

-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0년을 전후해서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에 공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1월에 공포하게 된다.
- 2010년 7월, 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한 교사의 과도한 체벌 사건 소위 ‘오○○ 사건’은 결과적으로 갓 등장한 학생인권의 필요성에 불을 냉겼다.
- 당시 교과부에서는 체벌 금지 및 출석정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3에 개정하게 된다.
- 체벌금지는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면, 출석정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일종의 학생 권리 존중에 따른 보완책이었다.
-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학칙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가 확대되고 학칙의 기재사항도 구체화되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도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12.3)도 뒤따랐다.
-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부와 해당 교육청,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립과 시각차가 뚜렷했고, 학교현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을 겪으며 학생지도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고, 실제로 해마다 명퇴신청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2. 조례 이후 생활지도의 긍정적인 변화

- 가장 큰 성과는 교육 현장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체벌문제, 학생권리, 개성 추구 등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지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 교사 중심의 권위적이고 통제 위주에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존중, 학생중심이라는 학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학교졸업식, 축제 등을 학생들이 참여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생자치문화가 확산되었고, 학칙 제·개정 관련 3주체 합동 토론회, 상벌점제와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등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심리치료 등의 인권 존중의 생활지도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 우리나라 교육 환경과 제도에 대해서 인권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인수 학급,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체제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토록 하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의 자살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각의 확장을 가져왔다.

3. 학교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위가 실추·실종되었다. 조례 때문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한결같이 학생 생활지도 때문에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다고 교사들은 토로하고 있다. 교사의 말이 예전처럼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는 학생들이 교실마다 상당수이다. 수업종료 후, 교실 문을 나서면 기쁨보다는 웬지 뒤통수가 가렵고 기분이 나빠진다고 넘두리하는 교사가 많다.
-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없는 혐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일단 학생지도와 관련되어 각종 다툼이 연루되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은 뒷전이고 교사에게 지도역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시선이 따라오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급적 문제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학생지도를 회피하게 된다. 다툼을 경험하거나 학생의 불순한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학생·학부모로부터 받는 교사의 감정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황이다. 담임 및 생활지도 업무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이 이야기가 아니다.
-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활용하는 학생들이 보편화되었다. 교육활동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규칙 이전에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교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게임 등에 중독되어 자기통제를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를 지도하려면 필경 학생과 마찰이 발생되고 수업진행이 어렵다 보니 묵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흡연현장을 적발했지만 흡연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히려 교사가 생사람 잡는다는 식의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사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자칫 지도하려다가 어떤 봉변(인권침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4.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우리나라에서 인권조례가 한참 논란이 일던 시기인 2011년 7월, 인권 선진국인 영국에서 학생 훈육 지침서가 발표된다.(New guidance for teachers to help improve discipline in schools, 2011.7.11) 이 지침에서는 그 동안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서 강조된 ‘노터치 정책(No touch policy)’을 완화하여 교사의 합리적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권리를 인정하고 아울러 술, 마약, 절도품 등에 대해서 학생의 동의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 학생의 권리와 인권 존중, 인권의식 함양은 시민교육 차원에서도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가치이다. 학교라고 해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예외적으로 특별히 제한될 이유는 없다.
- 다만, 학생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선과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공의 선과 이익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이하 법령으로 보장된다.
- 법령의 하위체계로 조례가 있고, 학칙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생활을 규정하는 학칙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문제는 상위법령의 하나인 조례가 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단위학교 학칙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상위법에서 학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생지도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 따라서, 작금 학교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혼란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을 존중·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위법 취지에 맞게 학칙의 단위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금번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조례의 상위법 상충문제, 학생권리 신장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확대하는 개정 방향은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강화)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학교의 책무이다. 개정안에서 학생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했다고 해서 인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의 인권은 책임과 의무의 균형 속에서 진보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학부모의 책임을 반영한 것도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상위 법령 위반 문제 해소) 조례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단위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교육감의 인사권이나 정책결정권에 대한 침해 논란도 차제에 정리하는 것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본다.
- (소수자의 교육 권리 보호 확대) 학교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빈곤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학생 운동선수,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 등의 교육 권리 실현을 위해서 조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가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 조례로써 반영한 것은 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 (사회적 논란 조항 수정) 입법 취지가 무엇이든 그동안 조례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사회적인 논란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면서도 그 개념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개인성향(個人性向)’ 개념을 도입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모으는 적절한 타협점이라고 생각한다.

6. 향후 전망과 과제

- 조례 등장 이후, 학생의 권리가 신장되었지만 교사의 지도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사의 지도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없다. 또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현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학생의 인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많지 않을 것이다.
- 조례 규정을 보면 다분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학생인 우리의 권리이다’라고 해석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그 의식의 연장선에서 최근 수년간 생활지도가 이루어져 왔고(실제로는 방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이를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 염색하고 파마하고 제한 없이 기른 머리를 학교에서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조례 개정안에서는 두발을 학칙으로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칙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두발 관련 조항을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학칙으로 제한할 수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개방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 두발뿐만 아니라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품검사, 수업방해 행위 등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지도해야 할 생활지도 영역이 방대하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도 지도해야 한다.

- 교육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조례 개정이 학생인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책의 축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일과 일선학교들이 학생지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과 별개로 일선학교에서 학칙이 민주적으로 제·개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학칙 운영 및 생활지도 가이드를 명확히 세워 일선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로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면 이에 필요한 교사용 지도자료 및 학생용 워크북의 개발·보급도 시급하다.
- 모든 학생은 가공되지 않은 보석이다. 교사가 신나야 원석 가공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학생이든 교사든 소중한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비롯하여 관련 교육정책, 교사의 노력,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조례 하나로써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례 또는 그 개정안의 정신은 학교문화를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소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 지향점은 교육 공동체의 공감과 노력 속에서만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조례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리라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한다.

이 경 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조례로 교사 지도권을 침해해 교실을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게 했고 또 임신 출산, 성(性)적 자유, 집회자유 등 독소조항을 포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민이 문용린 교육감 선출시 이미 폐지를 위임한 것인데 교육청은 1년 이상 인권조례개정에 시간, 인력, 비용을 허송하고 학교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정치조례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상위법 위반한 조례를 교육감이 보류 또는 폐지하고 단위학교 자율권을 허용했어야했다.

12월 30일 한국교총도 ‘권리다툼 조장하는 인권조례, 일부 개정보다 전면 폐기해야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인권 헌장이나 선언으로 대체해야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본인은 교육청 인권조례 개정추진 로드맵중 하나였던 ‘교사생활지도권 강화추진협의회’에 위원이었는데 구성(혁신학교 학생포함)과 운영, 참여도, 책임감등 도저히 그 비합리성을 참을 수 없어 사퇴했다.

마지막 회의는 15명 중 4명만 참석했고 아무리 성실히 숙제로 의견을 제출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의회를 왜 한 건지 지금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사례 대부분 국가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법, 조례가 아닌 사례중심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은 헌장, 선언 등으로 입학시 학생, 학부모가 인지하고 서약하는 방식이었다. 또 권리보다 책임, 의무 조항이 훨씬 많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며 학교사정,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한 교칙으로 학교자율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구 따로 개정 따로, 딱딱한 법조문으로 가득한 개정안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1. 지나친 자유나 차별등 지적되 온 사항들은 바꿔

복장, 두발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임신, 출산등 미혼모학생에 대한 학습권보장등 민감한 문제는 고쳐졌지만 그 외엔 단어만 몇 개 바꿔 개정이란 말이 우습다. 말장난 같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뱠질개정으로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숨겼기에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2. 학생인권조례 속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숨겨 놓고 있다.

7절 복지/ 23조 급식/ 3항 친환경농산물/ 4항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인권, 복지, 친환경, 무상 등 언어 마술에 빠진 것 같다. 지금 친환경식자재 비율등과 급식운영 방법 개선 논의가 활발하고 교육청 급식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 교육청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은 만들 때 숨겨놓은 이중안전장치를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감춰줄 의도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3. 학생인권위원회와 인권옹호관제도는 절대적으로 폐지 권고!

학생인권은 인권위원회나 옹호관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자리 를 만들어 차지하려던 사람들의 작품으로 과노현표 정책인데 왜 필요 없는 자리 없애는 노력에 이렇게 미온적인지 모르겠다.

4절-인권증진 체계, 학생인권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보면 기가 차다.

위원회 만들고 옹호관 생기면 그들은 뭔가를 해야 하니 기껏 한다는 게 인권교육과 홍보, 교재제작 배포다. 그럴 예산 있으면 다른데 쓰길 바란다.

30-1 일반인용, 중.고생, 초등생,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 유치원생 교육과정엔 한글 해독도 없는데 무슨 인권교재인가? 무조건 많은 기관을 아래에 두고픈 욕심에서 만들어진 것! 이 조례 만든 사람들 제 정신 있는지?

30-2-4 학생보호자에 대해 교육 또는 간담회 연 1회 이상 추진.

우리 학부모가 인권교육까지 받으려 또 학교가야하나? 인권현장, 선언문등 숙지하고 실천하면 되지 누굴 위해(학생인권위?) 학교에 불려 다니며 인권교육 받아야하는지 정말 속상하다. 양성평등교육법 때문에 매년 비슷한 양성평등 교육받느라 시간이 아깝다는 남편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겠는가?

학생 인권위원회와 학생 참여단

위원회공화국 오명도 아랑곳없이 굳이 필요 없는 일을 위해 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20명이나 위원을 두는가? 자꾸 자리 만들어 사람 앉히지 말고 교육에 충실하자. ‘소수자가 겪는 차별문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 자격이라니.. 참! 억지로 자리 만들어 난리가 아닌가?

공부도 버거운 아이들에게 학생참여단 100명? 또 참여단이 위원을 선출?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직원?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위원회는 계속 조례나 정책을 만들고 또 영향평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고 학생인권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러분 제발 막아주세요.

학생인권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과노현 좌파교육감이 일자리 나눠먹으려고 만든 자리. 왜 우리가 부족한 교육예산 가지고 그들이 나쁜 의도로 만든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려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숨은 그림을 제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은 핑계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육엔 관심 없고 교육이야 망가지든 말든 인권 앞세워 국민속여 자기들 세력 먹여 살리고 세 모아 오래오래 정권 잡으려 정치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도 우리교육 60년 이상 잘 해왔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아이들 선동 됐고 교사 수업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 모두 침해당했고 교실붕괴가 가속화됐습니다. 더 이상 제도가 교육을 망치게 해선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는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교육슬림화, 학교간섭, 지시 줄이기, 예산절감 위해 조례에서 반드시 삭제하길 바랍니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경영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가 그것을 막는다면 당장 폐기해야지 조금 고쳐서 될 일이겠습니까?

나쁜 서울시의회의 명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통과되면 참으로 고치기 어려우니 끝까지 싸우고 벼텨주십시오. 한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과 굴복은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폐기해 학교자율을 지켜 교육 살려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조례의 취지와 효력을 아예 무력화 하려는가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서울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래 같은 해 5월말에 설치된 서울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수차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조례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무효확인소송에 휘말려,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머물러 왔다. 조례에 따른 학칙개정도, 조례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학생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옹호관 임명이나 지침 마련도 뒤따르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학생인권위원회가 문교육감과 교육청에 전달한 권고들 역시 번번이 무시돼 왔고, 위원들은 교육청이 권고를 불수용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의 사전 검토 요청은 우리 위원회가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 연구용역팀의 보고서도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조례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으니 그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판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나 몰라라했던 조례에 대한 첫 번째 행보가 후퇴된 개정안의 발표라니,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조례도 사라졌다.'는 학생들 사이의 풍문이 그저 단순한 풍문만은 아님을 실감케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발의라는 '시민입법'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시민들의 지혜와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경험, 국제인권기준과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재정도 행정력도 없는 시민들이 단6개월의 시간만에 10만여 명의 이웃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 바로 현재의 조례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입법의 결실에 교육청이 손을 댈 때에는 개정 작업이 불가피한 사유를 엄밀히 검증하고 시민과 의회에 뜻을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이 과연 타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보장’에서 ‘제한’으로! 거꾸로 가는 개정안

이번 교육청 개정안은 얼핏 보면 몇몇 조항만 부분적으로 손댄 것 같지만, 사실상

학생의 인권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제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폭적 개정안이라고 봐야 한다. 학생인권의 방향을 '보장'에서 '제한'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3항에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을 사유로 언제든 학생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타인의 권리 침해를 제외하면 세 가지 사유 모두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학교장이나 일부 교사들의 자의적 해석 잣대에 따라 학생인권을 함부로 제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길을 터놓았다. 학생인권이 바로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침해되어온 구습을 바꾸고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금 과거로 돌려놓고 있다.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그 사유로 상위법령 위반 해소,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제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사회적 논란 조항 수정, 사회권적 기본권의 강화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개정 이유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개정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상위법 위반이란 단정은 성급하다

첫째, 교육청이 상위법령 위반으로 꼽고 있는 것은 교장의 학칙 제정권 제한과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제한이다. 우선 조례가 교장의 학칙 제정권을 제한하는지 살펴보자.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학칙과 생활지도 방향이 좌지우지되고 생활지도의 명목으로 학생의 인권이 함부로 제한된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더라도 그 학칙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과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이 학교의 장에게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 학교규칙에 담겨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만 학칙의 항목으로 기재해야 할 바를 정한 것일 뿐이다.¹⁾ 따라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복장을 제외한 학생의 용모를 제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곧장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법령의 공백을 메우면서 학생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두발은 자유로 한다.'는 학칙 조항을 두면 상위법과 조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앞세워 학생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원칙,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과 인권전문성 확보를 위해 규정된 업무의 독립성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정책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정책 활동의 타당성 확보,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권고를 통한 인권 옹호와 교육적 혼란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제한'하는 조항으로만 해석하는 강짜를 부리는 것은 옹졸해 보인다.

'합의'와 '의무'의 족쇄로 권리의 질식시키는 개정안

둘째,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개정안 제4조 5항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를 비롯한 각종 책무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 조례에도 학생에게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기 인권을 보호할 책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무,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에 정해진 학교규범을 존중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학생의 책무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개정안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책무'는 아예 삭제해 버리고, '학생의 참여' 대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교육에 협력할 책무'를 '교사의 교육활동과 지도를 존중할 책무'로 바꿔놓았다. 그동안 학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된 적 없고, 참여의 외양은 갖췄어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사가 우선시되면서 사실상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는 학생의 참여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일방적 '지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한 조례의 기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기에, 조례 어디에서 '지도'라는 말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안은 '학생의 참여 보장'을 다시금 '합의'로 후퇴시키고, '교사의 지도권' 아래 학생의 권리를 놓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라 볼 수 없다. 문교육감은 1월 5일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에 대해 "(의사표현의) 내용이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이라면 학교의 지도가 필요하다.", "학생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의 지도 아래 의사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의 인권보다 교사의 지도, 학교의 판단이 더 우선시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시각에 기반해 만들어져 학생인권에 상당한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의 편의 위해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개정안

셋째,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과연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 파국으로 치닫는 경쟁교육과 삶의 위기 때문인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교사의 생활교육이 과연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막연한 심증이 아닌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다. 몇몇 단체와 학교장들의 편파적 의견만 청취한 뒤, 교권이 무너졌다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맡은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교육부를 향해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실질적 혼란이 생겼고, 같은 혼란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해 교육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일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曲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교사의 생활교육에 일정 정도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생-교사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다. 게다가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교육적 해법을 찾아보기도 전에 학생인권 기준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학생인권은 교사의 직무상의 권리인 교사의 수업권보다 상위의 권리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을 통해 연거푸 확인되어 온 바이다.²⁾ 그런데 하위의 권리를 내세워 상위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상에도 맞지 않다.

게다가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두발·신발·장신구 등 용모 제한을 가능토록 하고, 소지품검사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 교사의 권리가 고작 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인권을 후퇴시켜도 되는가. 두발제한의 정당성은 한 번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 없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자유가 학생의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두발제한은 학생-교사간 갈등만 증폭시켜 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대표적 학생인권 사안이기도 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전국 학생·생활 실태조사 보고서>³⁾에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두발규제의 정당화 논리로 흔히 거론되는 '학업 성적 향상'에 대해 학생들의 92.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가 일률적으로 두발을 규제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83.6%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두발규제가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불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두발자유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진전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이 왜 굳이 두발을 단속하겠다 나서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학생의 머리카락이나 단속하고 별점을 매기는 것이 교사의 지도권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교사들을 모욕한다.

소지품검사의 경우에도 현행 조례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전면 금지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건강 침해'라는 사유로도 소지품 검사를 가능토록 했고, 사전에 통보만 하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도 가능토록 전면 허용했다. 학생들을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몰아넣고 학생의 가방을 뒤지는 구태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흡연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다면 금연교육을 안내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학생의 몸까지 뒤지겠다는 것인지, 더구나 불특정 다수 학생의 몸과 가방을 함부로 뒤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확보하겠다면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는 내팽개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만 키우겠다는 것인가.

차별해도 마땅하다고 선언하는 개정안

넷째, 사회적 논란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제5조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의 세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애초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정의 조항을 참고로 하여 다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적' 등 몇 가지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논란이 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도 이미 규정돼 있는 만큼 서울에서만 삭제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상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의 내용대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단지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금지 조항을 수정한다면, 교육청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소수자 학생이나 미혼모/비혼모 학생은 차별해도 된다는 선언적 효과를 낳게 된다. 개정안이 제28조의 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조항은 신설하면서도, 차별금지 조항에서 "임신·출산"을 삭제해버린 것도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물론 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개정안에서는 '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에서도 존재 자체가 지워져버렸다. 결국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 금지나 교육 지원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성향'이라는 차별 금지 사유를 두어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나, 그렇다면 28조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 조항을 남겨두었어야 마땅하다.

2)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등

3) 이 실태조사는 전국 초중고생 29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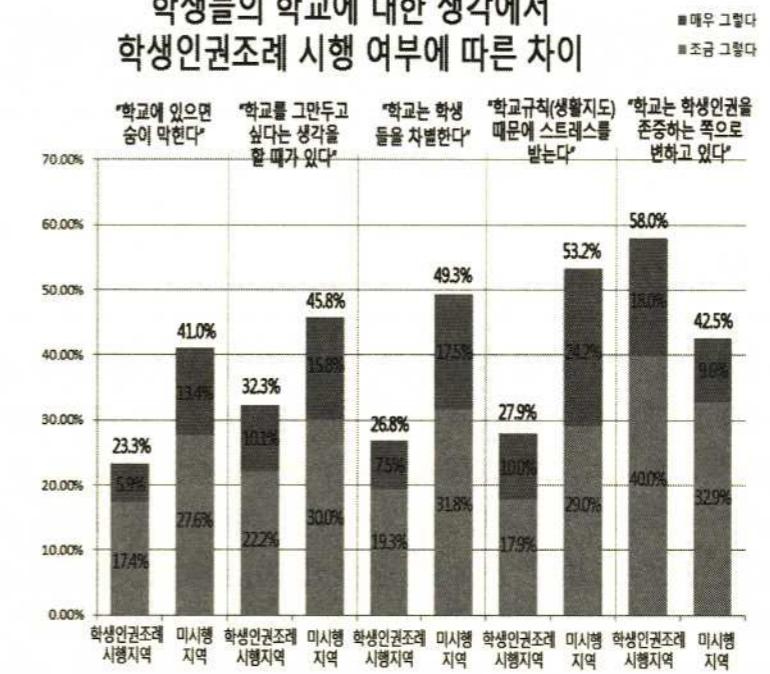
사회권 강화 취지가 무색해진 개정안

다섯째, 사회권적 기본권의 강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이미 보장돼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교육청이 조례 개정안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게다가 개정 내용이 사실상 다른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이미 보장돼 있는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개정의 긍정적 취지는 무색해지고, 다른 후퇴된 내용을 가리는 '눈속임용 조항의 신설'이라는 비판이 이는 것도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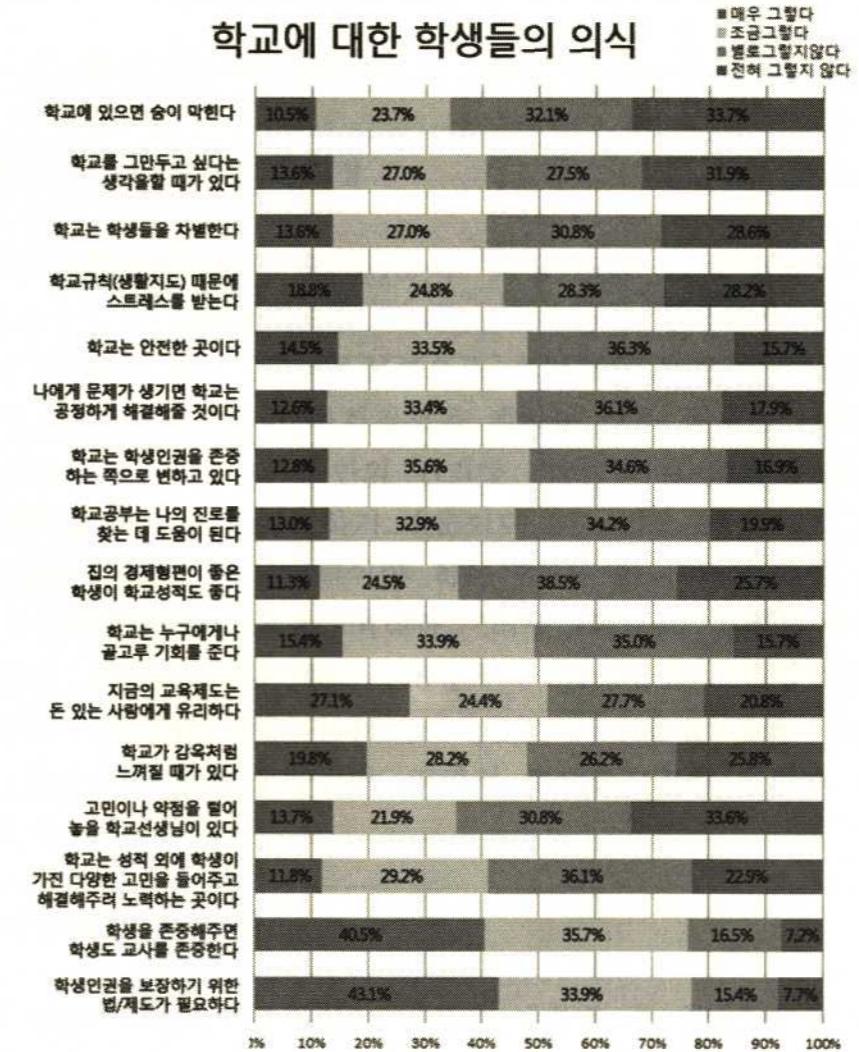
무엇보다 개정 자체의 사회적 효과가 우려되는 개정안

얼마 전 학내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인 고등학생이 '선동죄', '불손죄' 등 의 명목으로 징계위기에 몰려 화제가 된 적 있다. 얼마 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따끈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캠페인에 나서 큰 호응을 받은 적 있는데, 학생들은 이 추운 겨울에 고작 걸옷을 껴입을 자유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고3학생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허벅지에 뭉뚱이 체벌을 당하고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고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일도 없었을 터이고,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걸옷 규제를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공문이 배포되었을 터이고, 체벌도 예방할 수 있었겠지만 학생은 교육 청을 믿고 신고했을 터이다. 이번 교육청 개정안의 가장 나쁜 사회적 효과는 바로 이것일 테다. 원래도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우려와 집단적 위력을 기초로 불만만 제기하면 학생인권조례를 함부로 손댈 수 있다는 사회적 교훈, 인권기준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교훈, 그리하여 마침내 폐기까지 내다볼 수 있겠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앞서 언급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가 발표한 <전국 학생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 사이에 큰 격차가 발견됐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가 그나마 시행 중인 지역에서 학생들은 덜 고통스러웠고 덜 외로웠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서울교육청이 지금 서둘러야 하는 일은 문서나 들여다보며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조례의 시행을 앞당기는 일이고, 학생이 교사를 존중할 기회를 먼저 열어주는 일이다. 이 과정을 충분히 이행해본 다음에 발생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조례를 보완해도 늦지 않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차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

김 성 기

협성대학교 부교수

학생인권조례는 과거에 경시되어 왔던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무리 학교라는 특수공간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과거의 교육적 과오에 대한 반성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리에 수반되는 책무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되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위에서 나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행 조례는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형식상 맞지 않는 흡결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적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것이 학생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 개정 조례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 권리의 보장과 제한의 필요성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중 제1항의 “학생인권은 ...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며 ...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이라는 문구를 배제한 것은 일반인의 인권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 등에는 제한되듯이 학생의 인권도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육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외없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어떤 조항에도 특정인의 인권이 “반드시” 혹은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법적 과잉보호이다. 특히 제3항에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내포하는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모순된다. 따라서 절대불가침의 권리로 표현된 문구는 수정되어야 한다.

나. 권리 제한의 사유 적시

현행 조례 제3조 제항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떤 경우

에 제한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한 후에 신설 제4항에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적절한 입법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문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 소수자학생의 범위 조정과 지원의 구체화

제28조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 규정에 없는 북한이탈학생과 학습부진학생, 미혼모 학생을 새로 추가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반해 현행 규정의 성소수자는 그들의 성적 특성때문에 위와 같은 학생들처럼 교육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해 성소수자가 빈곤 학생이나 장애 학생, 다문화 자녀, 탈북 학생, 학업부진학생처럼 그 특성으로 인한 긴급한 지원을 요하는 대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 특성이나 지향 때문에 교육적으로 차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5조에서 천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빈곤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그것이 조례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타법에서 세세하게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보다 더 원론적인 사항으로 구성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보장 방향, 기준, 절차,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협소하게 몇 가지 원칙적인 방향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경우 자칫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가 오히려 해당 학생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0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 학생의 권리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용모 규정의 학칙 제정권 보장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서는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규칙은 시행령 제9조 제5항에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상위 법령에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원천적으로 제한을 금지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용의·복장 등에 대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실현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용모에 대해 학생의 자율권을 인정하되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 학교질서유지 등 정당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회피권(opting out)을 보장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연예인 활동 등 정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폐지

제38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처우와 복무 사항은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이나 교육감이 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폐지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교육감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교육감 권한 관계 재정립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현행 조례 제49조 제5항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그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해자나 관계인 등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임용권자이면서 복무 관리 지도·감독권자인데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한체계상 맞지 않다. 따라서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45조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2. 개정 조례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 위원회의 동의권 삭제는 철회해야

예고안에서 위원회의 동의권 삭제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조례 제38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3조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위원회는 평가, 권고,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모조직으로서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동의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취지에서 동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라고 해서 무조건 심의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동의권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국립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제청할 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위원회가 동의권을 갖고 행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예고안에서 옹호관 해촉시 위원회 동의절차는 삭제했으면서 동의안 처리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다.

나.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해야

제38조 제6항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독립적으로”라는 말을 삭제한 것은 철회하여야 한다. 임명직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신을 선언한 문구로서 적절하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와 같이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행정기관의 행위가 혹시라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가. 권리보호 주체로서의 교직원 규정 검토

권리보호 주체로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라는 표현이 현행 조례의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교직원에 학교장이 포함되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교직원”이 혼재되어 있다. 교직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교장의 명이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행위주체는 교장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서 학교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당연히 하급자들, 즉 다른 교직원들의 행위도 제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현행

조례에서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직원이 학생인권교육을 하지 않을 뿐더러 교원도 결국은 학교장의 명령에 의해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등 타법률에서의 입법형식에서도 그러하다. 교직원의 자격이나 배치기준을 열거하는 경우 외에는 일일이 교장과 교직원이 행위주체로 열거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생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일일이 교장과 다른 모든 교직원이 보호 주체로서 열거되지 않고 학교의 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나. 학생인권교육시간의 효율화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너무 많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이와 별도로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 인권교육이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을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2시간으로 정하기보다는 위의 다른 교육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상황에 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나아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부분적으로 인권교육이 서로 중첩될 수 있고, 또 이를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다. 폭력 규정의 조정

현행 조례 제6조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이라고 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어

자칫 다른 유형의 폭력은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므로 동법의 학교폭력에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형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이라고 통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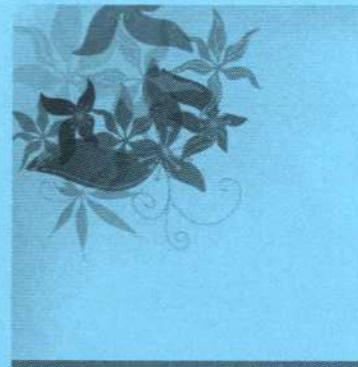
라. 비교평가 배제보다는 성적에 의한 차별 금지 필요

현행 조례 제8조에서는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비교평가, 즉 석차를 내는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배치된다. 관리지침 제15조 제3항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원점수/과목평균」, 고등학교의 경우 「원점수/과목평균(표준 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비교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불일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상대평가를 부정하는 것, 즉 성취평가제에 의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내신제를 무력화시켜 외고나 자사고와 같은 학교들이 대학입학전형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결국 신입생유치단계에서부터 불리해진 일반학교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내신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수능점수에 따라 대입의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고, 결국은 지역간, 계층간, 학교간 서열화를 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비교평가를 배척한다는 것이 근사해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함정이 있다.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은 평가결과, 즉 성적에 따라 학생을 비교적으로 차별대우하는 관행이다. 성적에 따라 급식이나 의자, 에어컨 등 교육여건을 차등화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더욱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교내 종교 선전 금지

현행 조례 제16조에서는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학생이 학내에서 종교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공공영조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종교 선전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 학교는 그 공간적 특성상 폐쇄적이기 때문에 종교 선전을 회피하기도 곤란하므로 자칫 특정 학생들의 종교 선전이 다른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와 폐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동아리가입권유 행위인지 명백한 종교 선전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 규제하기는 곤란하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부 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로,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을 “학교생활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제한의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호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3.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제5조제1항 중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를 “가족형태”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성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그 임기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제28조 앞의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삭제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앞의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3장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을 삽입한다.

제28조의 제목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적극적 권리 실현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소수자, 근로”를 “북한이탈 학생, 근로 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로,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를 “경제·사회·문화적 자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로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빈곤 학생의 권리) ①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경제·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빈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 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3(장애 학생의 권리) ①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는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한부모 가정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5(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 ①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의 문화는 물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① 학생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8조의7(북한이탈 학생의 권리) ① 북한이탈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

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북한이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북한이탈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8(근로학생의 권리) ① 근로학생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9(학습부진 학생의 권리) ① 학습부진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문화·상담·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이 학교교육에 적응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상담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학교 밖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임신·출산한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임신·출산한 학생의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향의 임신·출산한 학생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앞의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를 삭제한다.

제33조 앞의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을 삭제한다.

제38조 앞의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을 삭제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삭제한다.

제44조 앞의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를 삽입한다.

제29조 앞에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를 삽입한다.

제33조 앞에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을 삽입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사람 5명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사람 2명 이상”을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람 1명 이상”을 “사람”으로 한다.

제38조 앞에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을 삽입한다.

제38조제2항 중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경우에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직무를 독립적으로”를 “직무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별도의 조례로”를 “교육감이”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삽입한다.

제44조 앞에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삽입한다.

제44조제2항제6호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지역”을 “시·도”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4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제51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7조 앞에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삽입한다.

제51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 ----- -----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 학교생활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제한의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 ④ (생 략)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삭 제>
⑦ 보호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3.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족형태 개인성향)를 가진다.
② (생 략)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생)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현행

략)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생 략)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 ② (생 략)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다만, 성적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그 임기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신 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④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

제28조(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 ① ---

북
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 경제·사회·문화적 자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빈곤 학생의 권리) ①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경제·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삭 제>

<신 설>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빈곤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3(장애 학생의 권리) ① 특수 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는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권리 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

<신 설>

보장) ① 한부모 가정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5(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 ①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의 문화는 물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① 학생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학교의 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학교의 장은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한다.

제28조의7(북한이탈 학생의 권리) ① 북한이탈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

<신 설>

<신 설>

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북한이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북한이탈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8(근로학생의 권리) ① 근로학생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9(학습부진 학생의 권리) ①

학습부진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문화·상담·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 학생이 학교교육에 적응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상담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

<신 설>

<신 설>

	<p>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학교 밖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생략)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p>④ ~ ⑦ (생략)</p>	<p>③ ----- 사람</p> <p>1. ----- 사람</p> <p>2. ----- 사람</p> <p>3. (현행과 같음)</p> <p>4. ----- 사람</p> <p>5. ----- 사람</p> <p>6. ----- 사람</p> <p>7. ----- 사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신설>	<p>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임신·출산한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로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임신·출산한 학생의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전향의 임신·출산한 학생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삭제></p>	<p><삭제></p>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신설>	제4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신설>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설>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삭제>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② -----
<신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⑤ (생 략)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생 략)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신 설>

중에서 -----.

<삭 제>

④ -----

----- 경우에만 -----

-----.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직무를 -----
-----.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교육감이 -----.

<삭 제>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신 설>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 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 8. (생 략)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신 설>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 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 ⑧ (생 략)

제5장 보칙

<신 설>

<삭 제>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부 ----- 시 · 도 -----

7. · 8. (현행과 같음)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통보하여야 -----.

<삭 제>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보고 -----.

⑤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장 보칙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제한의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⑥ 삭제

⑦ 보호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3.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제2장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

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개인성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체벌과 학교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과 학교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 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그 임기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 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 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별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

제28조(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28조의2(빈곤 학생의 권리) ①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경제·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빈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3(장애 학생의 권리) ①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는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한부모 가정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5(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 ①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의 문화는 물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① 학생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8조의7(북한이탈 학생의 권리) ① 북한이탈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북한이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북한이탈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 제28조의8(근로학생의 권리)** ① 근로학생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8조의9(학습부진 학생의 권리)** ① 학습부진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문화·상담·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이 학교교육에 적응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상담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학교 밖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임신·출산한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임신·출산한 학생의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임신·출산한 학생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7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삭제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 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47호, 201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성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

2014년 월 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FAX 02-3999-754)